

크리스마스 ‘숙박비 바가지’ 기승

예약업소 ‘돈 더 내라’ 일방 취소 이용자 ‘울며 겨자 먹기’ 웃돈 중개 앱 이용땀 피해 구제 어려워 소비 방식 변화 따른 규제 시급

광주에 위치한 A모텔은 크리스마스-연말을
요금을 내걸었다. 평소 5만원-10만원(주말기
준)인 숙박비가 24일에는 12만원-30만원으로 올
랐다.

이날 숙박 예약은 불가능하고 입실도 자정 이후
에나 가능하다. 업소 관계자는 “대실 손님이 많을
텐데 취소 가능성이 있는 숙박 예약을 받을 수는
없다”며 “아예 대실만 하고 숙박 손님은 안 받는 모
텔도 있다”고 귀띔했다.

김모(여·37)씨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부
모님과 함께 기분좋은 여수 여행을 계획했지만, 출
발하기도 전에 기분이 상했다.

이달 초 여수시 돌산읍 한 펜션을 숙박업소 중개
앱을 통해 예약했지만, 여행 출발 10일전인 지난
12일 갑자기 숙소로부터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직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아 초과 예약을 받았다는 게 취소의 이유지만,
“크리스마스 바가지 상술”이라는 게 김씨의 설
명이다.

김씨는 “얼리버드 특가로 쓴 가격에 예약이 진행
돼 업체에서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리고 예약을
취소 한 것 같다”면서 “부라부라 숙박업소를 찾아
헤맸지만 크리스마스와 주말, 성수기가 겹쳐서 이
미 24-25일 숙박비가 평소 다른 주말과 비교해 3배
까지 가격이 치솟아 있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연인들과 가족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연말
크리스마스에 광주-전남의 숙박업소에서 ‘바가지
상술’을 벌이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업소에서 예약 취소를 해버리면 모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뚜렷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숙박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광주 시내 숙
박업소는 평소보다 3배까지 가격을 인상했다.

모텔비는 부르는 게 값이지만 방을 구하기 힘들
정도다.

대목을 맞은 업계의 바가지 물가가 기승을 부리
다보니 고물가에 집값이 낮아진 지역민들은 ‘크
리스마스가 공포스러운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광주에 사는 조모(27)씨도 한달전인 지난 11월
크리스마스를 연인과 즐겁게 보내기 위해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숙박업소를 예약했다.

하지만 체크인을 3일 앞둔 지난 21일 일방적인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업소 측은 “최근 주인이
바뀌면서 가격이 올랐으니, 그만큼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취소의 이유를 밝
혔다.

업체는 당초 예약한 숙박비인 5만원의 2배인
10여만원을 숙박비로 낼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에 조씨는 항의하자 숙박업소는 추가요금의 절반
을 더 내면 예약을 유지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조차 거부하자 숙박업소는 “절반가격의 일부
에서 조금 더 깎아주겠다”고 추가금을 요구했다.
조씨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집값 올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서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고 말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숙박업소 관계자는 “전 주인이 판매를 할 때 매
출액을 늘리기 위해 성수기에도 요금을 똑같이 적
용해 예약을 받아냈던 것”이라며 “정상 운영하기

위해 성수기에 맞게 금액을 조정한 것이다”고 해
명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규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요금표보다 비싼 부당요금을 받을 경우 민원
제기도 가능하지만 요금표 자체를 올리버리면 문
제제기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숙박
업소 중개 앱을 통해 거래를 할 경우 구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업
자의 귀책사유’로 숙박 예약이 취소될 때, 사용 예
정일 1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주고, 3
~7일 이내에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10-
60%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심지어 사용 예정일
1일 전이나 당일 취소의 경우 손해배상까지 요구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숙박업소와 직접 만나 예약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른 중개업체를 통해 숙소를
예약한 경우 중개업체와 소비자, 중개업체와 숙박
업소 사이에서 작성한 ‘약관’이 우선돼 배상을 받
기가 복잡하고 어렵다.

광주시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광주지역에
접수된 숙박시설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2019
년 242건→ 2020년 306건→ 2021년 41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구제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전문가들
은 소비 패턴을 분석해 기존 규제 방식에서 벗어
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부 관계자는 “지금의 규정
으로는 소비자들이 예약 전에 약관을 꼼꼼하게 확
인하고 숙소 쪽에도 더블체크를 해야 한다”면서
“새롭고 소비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규정이나 고시
사항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행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따뜻한 겨울 나세요”...털목도리 전달식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22일 오
후 광주시 북구 문흥동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열
린 겨울나기 털목도리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광산구 교회 목사 교회돈 횡령 의혹 피소

신도들 아내·장로 등 6명 고소

광주의 한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했다
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의 A교회 신도 290명은
최근 A교회 담임목사 B씨와 아내, 재정장로 등 6
명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등 혐
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도들은 지난 10월 내부 회계 감사를 벌인 결
과 B목사의 횡령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회는 지난 6월 건축 담당 장로 C씨가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자 재발 방지 목적에
서 회계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C씨는 지난 2015년부터 교회 건축 계
좌에 있던 대출금 33억원을 끌어다 주식·코인·증
권 투자 손실을 메우고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도들은 B목사가 이를 묵
인하고 매달 수천만원씩 건축계좌로 자금을 이체
하고서는 돈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배임 행위

를 했다고 주장했다.
33억원 중 분당 건축비 대출금 18억여원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대출금 기한연기 신청을 반
복해 변제를 미뤄온 기록이 확인됐다.

신도들은 B목사가 지난 2008년부터 교회 현금을
사용, 자신과 아내 명의로 퇴직금 명목의 연금
과 적금을 넣어 총 11억 6400만원을 모은 점도 지
적했다. 이들 연금·적금 계좌에서 지난 2015년
5000만원, 2021년 1억 2000만원을 무단 인출해
자녀 주거비 및 생활비로 제공해 교회 돈을 횡령했
다는 주장도 폈다.

B목사는 “C씨의 횡령 건은 그를 믿고 건축회계
일을 맡겨서 확인 점검을 안 했을 뿐 묵인 방조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대출금 기한연기 신청을 한다
고 은행을 찾았던 적도 없으며, C씨가 신청서를
위조해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교회 현금으로 퇴직금 삼아 연금·적금을 넣
는 것은 모든 교회에서 하는 관행이며 불법이 아니
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지검 수사·재판 도피 사범 기소 중지 76명 검거·6명 구속

광주지방검찰청이 수사나 재판을 피해 도망다
닌 도피사범 76명을 붙잡았다.

광주지검은 올해 7월 ‘기소중지자 집중수사팀’
을 신설하고 총 6명의 인력을 증원에 도주 등의 이
유로 기소가 중지된 피의자, 재판에 불출석한 피
고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달아난 자유형
미집행자 등 총 76명을 검거해 이중 6명을 구속했
다고 22일 밝혔다.

여러 사람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 갖지 않은 혐의
(사기)로 붙잡힌 A씨는 2015년 4월 구속 전 피의
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나타나지 않고 달
아나 7년 6개월만에 다시 붙잡혀 구속됐다.

결혼을 미끼로 미혼남성에게 1억 2000만원을
편취해 2년간 숨어다니며 수사에 응하지 않은 B
씨도 구속을 면치 못했다.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들에게 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C
씨는 친동생의 신분증을 사용하며 2년간 도피생활
을 이어가다 검거됐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정광고 학폭 6명 항소심서 감형

1년 이상 학교 친구를 괴롭혀 죽음으로 내몰
려 1심에서 징역 등 유죄 판단(광주일보 2022
년 6월 27일자 1면 등)을 받은 10대들이 항소심에
서 감형을 받았다.

객관적 양형조건이 바뀌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
이 용서는 커녕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데도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공탁’ 등을 감형 요소
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고법 형사1부(8고법판사 이승철)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재판에 넘겨진 총 10명 중 5명에게
소년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중 실형이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진 6명과 검찰이 모
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주범 김모(18)군은 1심에서 징기 3년 단기 2년
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징기 2년 6개월
단기 2년으로 감형됐다. 김군에게는 40시간의 성

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나머지 피
해자들 2명도 각각 징기 1년 6개월 단기 8개월, 징
기 1년 6개월 단기 1년으로 감형됐다.

피해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박모(18)군에 대
해서는 공동폭행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기 1
년 단기 6개월을 선고했으며, 다른 2명은 각각
500만원 벌금형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
로 감형됐다. 이들은 광주 모 고교 1학년 시절이던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 29일 피해 학생 A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1년에 걸쳐 학
교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과 괴롭힘 영상 촬영 유죄, 여자친구와 가
족에 대한 성적 비방 등 갖가지 학교 폭력을 저지
른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니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정 금액
을 각각 공탁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
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화지점